

학칙일부규정개정안

1. 의안주문

학칙 일부규정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3항의 “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”을 “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”으로 개정함에 따라 입학 후 신설, 변경되는 모집단위로의 전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(학칙 제19조)

나. 학사제적으로 제적 된 자가 재입학한 후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영구 제적처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전과제도의 개선

1) 동일학년 모집단위로만 전과가 가능하였으나 입학 후에라도 신설, 변경된 모집단위로도 변경할 수 있다.

2) 전과를 신청할 수 있는 학년이 3학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4학년1학기로 확대하고 학기 당 이수학점수도 15학점에서 10학점으로 총 평점평균을 2.5에서 2.0으로 하향하여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.

나. 학사경고로 학사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재차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완전 제적으로 처리함.

4. 시행일

2025년 3월 1일

5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1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[학칙]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9조 (전과) ① 전과는 입학 당시의 소속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학정원의 100% 범위 내에서 2, 3학년 매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.</p> <p>②</p> <p>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 <p>제39조 (학사제적)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9조 (전과) ① 전과는 소속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입학정원의 100% 범위 내에서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.</p> <p>②</p> <p>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 <p>제39조 (학사제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학사제적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</p>	